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- 662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2년 9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21.4.2., 제정) 제4조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(30%)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○ 공영주차장의 요금(별표1)

-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 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할인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264, FAX: 3396-8873, 메일: rokaff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비고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【별표1】</b>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</p> <p>&lt;비 고&gt; 1~22. (생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<p><b>【별표1】</b>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</p> <p>&lt;비 고&gt; 1~22. (생략)</p> <p>23.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 인한다.</p>